

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3. 8. 10 선고 2022가단2328 판결 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주식회사 B

변 론 종 결 2023. 4. 6.

판 결 선 고 2023. 8. 10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대구지방법원 구미등기소 2021. 4. 1. 접수 제1962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

가. 인정사실

1) 원고는 2021. 3. 26.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(이하 ‘이 사건 각 부동산’이라 한다)을 매매대금 170,000,000원에 매도하되(이하 ‘이 사건 매매계약’이라 한다),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임대하여 발생한 임대소득 전액을 원고에게 매월 말일 입금하도록 하고,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은 원천 무효로 하며,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귀속하기로 하였다(이하 ‘이 사건 특약’이라 한다).

2) 원고는 2021. 4. 1. 피고 앞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.

3)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임대하여 발생한 임대소득 전액을 입금하지 않았다.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나. 판단

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특약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피고 앞으로 경료된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2.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

가. 주장

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임대하기 위한 피고의 노력에 비추어 임대소득 전액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특약에 따른 무효 내지 해제를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.

나. 판단

권리행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, 주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어야 하고,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볼 수 있어야 하는데(대법원 2013. 4. 25. 선고 2012다115243 판결),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오로지 피고에게

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데 목적이 있을 뿐 원고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,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.

3. 결론

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최유빈

별지목록

1. 경복 구미시 전235㎡

2. 동지상

철근콘크리트구조 (철근)콘크리트지붕 4층 단독주택

1층 다가구주택(계단실) 14.04㎡

2층 다가구주택(4가구) 134.12㎡

3층 다가구주택(4가구) 134.12㎡

4층 다가구주택(3가구) 135.53㎡

